	사회봉사활동운영 규정	제 정 일	2013. 8. 1
		개 정 일	2019. 1. 1
		개정차수	3차
		담당부서	학생서비스과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여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교직원의 사회봉사

제 2조 (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)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
2.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
3.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
4. 공공기관 의뢰, 교육, 강연, 평가, 출제, 심의위원 활동
5. 국내·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
6.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교육 및 특별강연
7. 산업체 경영 지도 및 자문
8. 학생 봉사 활동 지도
9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

제 3조 (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지원) 본교는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4조 (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)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·관리한다.

제 5조 (교직원 봉사상)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직원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 3 장 학생의 사회봉사

제 6조 (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)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공서
2. 요양소,병원,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사회단체
3. 종교단체 및 시설

4. 육아, 특수교육시설
5. 지역사회 봉사활동
6. 공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
7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 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

제 7조 (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) 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은 학생처에서 총괄하며 사회봉사 활동 운영에 대한 심의, 평가 등은 사회봉사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②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선발 방법, 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은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③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
④ 학생이 개인 또는 팀별로 국내의 공인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,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또는 봉사 기관 발급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본교에서 정한 자료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⑦ 사회봉사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8조 (재해책임) 학생이 사회봉사 활동기간 중 부상 등을 입거나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4 장 사회봉사운영위원회

제 9조 (사회봉사운영위원회) 본교의 사회봉사에 관한 제반 업무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사회봉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, 각 행정처·국장 및 각 학부(과)장으로 한다. (개정 2014. 1. 1, 2014.11. 1, 2019. 1. 1)

제11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 시 위원장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
2. 사업계획 심의 및 추진
3. 학생, 교직원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회봉사와 관련된 사항

제13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